

원스토어 주식회사

정 관

제정 : 2016. 3. 1

개정 : 2016. 3. 2

개정 : 2019. 9. 10

개정 : 2021. 3. 30

개정 : 2021. 4. 27

개정 : 2022. 3. 29

개정 : 2025. 3. 28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는 원스토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라 하고, 한글로는 원스토어 주식회사로 표기하며, 영문으로는 One store Co., Ltd.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
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정보통신사업 및 통신과금서비스업
2. 소프트웨어 개발, 공급 및 소프트웨어사업
3.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
4. 별정통신업, 부가통신업 등 전기통신사업
5. 게임물의 제작, 배급, 제공업
6.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

7.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의 제작, 배급, 제공, 운영 및 뉴미디어 사업
8. 출판업
9. 통신판매업, 통신판매중개업 등 전자상거래업
10. 전자금융업
11. 데이터베이스, 정보프로그램 작성 및 정보제공업
12. 광고업 (2021.3.30 본 호 신설)
13. 기타 위 각호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(2021.3.30 본 호 개정)
14. 기타 위 각호의 해외사업 및 위 각호의 사업에 부수 또는 수반되는 사업
(2021.3.30 본 호 개정)

제 3 조 (본점 및 지점)

- ① 회사는 경기도 과천시에 본점을 둔다. (2025.3.28 본 항 개정)
-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광고방법)

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onestore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 (발행할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,000,000 주로 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

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,000,000 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(2019.9.10, 2021.3.30 본 항 개정)
-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 (2021.3.30 본 항 신설)

제 9 조 (주식등의 전자등록)

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
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9 조의 2 (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, 그 발행 한도는 제 5 조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으로 한다.
-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연 10%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 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⑤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한 경우, 회사가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의 범위 내에서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고,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
- ⑦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적 권리가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0 조 (전환주식)

-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주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 다만,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.
 - 2.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생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1 조 제 4 항을 준용한다. (2019.9.10, 2021.3.30, 2022.3.29 본 조 개정)

제 10 조의 2 (상환주식)

- ①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③ 상환기간(또는 상환청구 기간)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.
 - 1.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 - 2.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- ④ 회사는 상환청구기간의 단축 및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가액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0 조의 3 (상환전환 우선주식)

- ① 회사는 제 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10 조 및 제 10 조의 2 를 준용한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불구하고 우선주식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1 조 (신주인수권)

-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,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 1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2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3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·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4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5.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
 6.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7.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8.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-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.

제 11 조의 2 (주식의 양도) (2021.3.30. 삭제)

제 11 조의 3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(단, 상장회사가 되는 경우 100 분의 15)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(이하 “최대주주”라 함)와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⑥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
 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
 -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
 -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
 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
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
제 12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
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 13 조 (명의개서 및 질권등록) (2021.3.30. 삭제)

제 14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신고) (2021.3.30. 삭제)

제 15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8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
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.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.

-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제 15 조의 2 (주주명부)

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
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3 장 사채

제 16 조 (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관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8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9 조 제 1 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
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정관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8 조의 2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19 조 (준용규정)

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20 조 (주주총회 구분 및 소집시기)

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.

제 21 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
제 22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23 조 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. 다만,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5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25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(2021.3.30 본 항 개정)
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6 조의 2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
회사, 회사의 모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27 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8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본인 또는 자신이 적법하게 임명한 대리인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
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
제 29 조의 2 (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)

-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30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

제 31 조 (이사의 수와 선임)

-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(2021.4.27 본 항 개정)
-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
-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2 조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33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4 조 (이사의 결원과 보선)

-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조 개정)

제 35 조 (이사의 직무 및 보고의무)

-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
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이사는 매 분기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항 개정)
⑥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36 조 (감사) (2021.4.27. 삭제)

제 37 조 (감사의 직무) (2021.4.27. 삭제)

제 38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.
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 (2021.4.27 본 조 개정)

제 39 조 (이사·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정) (2021.3.30. 삭제)

제 6 장 이사회·감사위원회

제 40 조 (이사회 구성)
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제 41 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가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이사의 소집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의 소집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개최 2 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(2021.4.27 본 항 개정)

제 42 조 (이사회 의결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3 조 (운영)

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정할 수 있다.

제 44 조 (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1. 감사위원회
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3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40 조 내지 제 42 조, 제 4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45 조 (이사회 의사록)

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사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 (2021.4.27 본 조 개정)

제 45 조의 2 (상담역 및 고문)
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(2021.3.30 본 조 신설)

제 45 조의 3 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⑧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조 신설)

제 45 조의 4 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 (2021.4.27 본 조 신설)

제 45 조의 5 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조 신설)

제 7 장 계 산

제 46 조 (사업연도)

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47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)

-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감사위

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 2. 손익계산서
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(2021.4.27 본 항 개정)
-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항 개정)
-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47 조의 2 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(2021.4.27 본 조 개정)

제 48 조 (이익금의 처분)

회사의 매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임의적립금
4. 배당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49 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- ③ 제 1 항의 이익배당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여도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. 단,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. (2021.3.30 본 조 개정)

제 8 장 보 칙

제 50 조 (삭제)

제 51 조 (세칙제정) (2021.3.30. 삭제)

제 52 조 (적용범위)

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)

이 회사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,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6 년 1 월 21 일자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
제 3 조 (사업연도에 관한 특례)

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 4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 (발기인)

이 회사는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에서 Tstore 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.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)

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, 분할 전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

2016 년 1 월 21 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

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

대표이사 서 진 우

부 칙(2016. 3. 2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6. 3. 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9. 10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. 9. 1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3. 30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1. 3. 30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)

이 정관의 내용 중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은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상장회사에 더 엄격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내용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미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(2021. 4. 27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1. 4. 27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)

이 정관의 내용 중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은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상장회사에 더 엄격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내용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미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 3. 29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2. 3. 29.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3. 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5. 5. 7. 부터 시행한다.